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. 10. 21 선고 2021가단1001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, 김재인, 정우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신하, 노민우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유병일
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현영

변 론 종 결 2022. 9. 16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1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14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들과 D 사이에 2021. 6. 9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들은 D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21. 8. 26. 접수 제72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소99286호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. 5. 16. “D는 원고에게 12,292,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”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(이하 ‘이 사건 판결금 채권’이라 한다)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D의 모친인 E은 2021. 6. 9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 D와 피고들 등이 있으며, D의 법정상속분은 1/7이다.

다. 피고들은 2021. 8. 26. E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2021. 6. 9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D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안산시 상록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에 성립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D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, 위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, 이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나아가 D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.

다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/14 지분에 관하여, D와 피고들 사이에 2021. 6. 9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D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한지연

[별지]

부 동 산 의 표 시

1.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248.6㎡

2.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

철근콘크리트구조

경사지붕 4층다가구주택

1층 99.9 평방미터

2층 141.96 평방미터

3층 124.32 평방미터

4층 109.2 평방미터

(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관할)

